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3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3. 22. 신종갑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3. 3. 24.
다. 상정일자: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3. 3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차해영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 2) 구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안 제2조)
 -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 연간 사용료 1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계약

3. 검토의견 [신준호 전문위원]

가. 조례 제정 배경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하는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여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의결권을 행사하여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강화하고자 제안됨.

나. 주요 조문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2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의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과 연간사용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의결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지방의회가 그 관할 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합성행위¹⁾로의 의사결정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본칙 안 제2조제1호의 의결사항인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사용수익권만 투자하고, 민간기업은 그 재산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자금을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그 사업수

1) 공법행위 중 공법적 법률효과를 형성하는 행위의 성질에 의한 분류의 한가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의사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익을 배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행위로 보여지고, 안 제2조제2호는 연간사용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에 대한 의결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기에 공유재산의 관리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지방의회 차원의 의결권 행사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다른 법률과의 상충되는 점이 없어 법률의 구조적 정합성을 이루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연간사용료 기준 금액은 상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고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및 공시지가 및 구 사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됨.

<표 1. 공유재산 관리행위 현황(2018년~2022년)>

(단위 : 건)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1	민자유치사업			1			·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개발
2	사용허가 및 대부(임대)계약	2	3	3	3	4	· 우리은행 마포구청지점 · (구)마포구의회 청사 사용·수익허가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양화진 홍보관

- 다만,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정한 의결사항 외 별도의 의결권한을 규정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따라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된 ‘기관대립형’ 구조에서 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다소 있어 보임.
- 따라서, 의회 의결사항이 집행기관의 시정 및 능동적인 행정 수행에 지장

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의 건전한 견제기능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의결사항에 대한 사항별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